

김웅 / 4월 / 기초GS / 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8865	20.5	13	0	0	33.5	1	2.63%	38
551657	20.5	11	0	0	31.5	2	5.26%	
559515	19.5	12	0	0	31.5	2	5.26%	
556448	20.5	10.5	0	0	31	4	10.53%	
558045	19	11.5	0	0	30.5	5	13.16%	
558759	19.5	10.5	0	0	30	6	15.79%	
556213	19	10.5	0	0	29.5	7	18.42%	
557854	18.5	11	0	0	29.5	7	18.42%	
559617	18	11.5	0	0	29.5	7	18.42%	
556337	19.5	9.5	0	0	29	10	26.32%	
556305	18.5	10.5	0	0	29	10	26.32%	
557914	19	9.5	0	0	28.5	12	31.58%	
559642	18.5	10	0	0	28.5	12	31.58%	
556408	18	10	0	0	28	14	36.84%	
559326	17.5	10.5	0	0	28	14	36.84%	
559777	18	10	0	0	28	14	36.84%	
559542	18.5	9.5	0	0	28	14	36.84%	
559808	19.5	8.5	0	0	28	14	36.84%	
556214	17.5	10	0	0	27.5	19	50.00%	
556219	16.5	11	0	0	27.5	19	50.00%	
558128	16.5	11	0	0	27.5	19	50.00%	
557844	17.5	9.5	0	0	27	22	57.89%	
562382	17.5	9.5	0	0	27	22	57.89%	
556416	16.5	10.5	0	0	27	22	57.89%	
558091	17.5	8.5	0	0	26	25	65.79%	
559780	16	10	0	0	26	25	65.79%	
559484	14	10.5	0	0	24.5	27	71.05%	
556205	15.5	8.5	0	0	24	28	73.68%	
559650	15.5	8.5	0	0	24	28	73.68%	
558101	15	8.5	0	0	23.5	30	78.95%	
559740	15.5	8	0	0	23.5	30	78.95%	
559390	15.5	7.5	0	0	23	32	84.21%	
555788	14.5	7	0	0	21.5	33	86.84%	
558950	12.5	7	0	0	19.5	34	89.47%	
557843	17.5	1	0	0	18.5	35	92.11%	
556483	12	6	0	0	18	36	94.74%	
559653	16	0	0	0	16	37	97.37%	
559619	9	3.5	0	0	12.5	38	100.00%	

김웅/4월/기초GS/6회/1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논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갑의 과일 포장 용기 디자인이 공지되었으므로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될 것이라고 작성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심사등록출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성 등을 심사하지 않으므로(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2항), 본 설문에서는 제37조 제4항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하셨어야 합니다.

(2) 설문 2

설문 1과 달리, 설문 2에서는 갑의 과일 포장 용기 디자인이 TV 방송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진 경우이므로 신규성 흠결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거절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5항).

따라서 설문 2에 신규성 거절이유 및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에 관하여 작성하는 것이 논점 배치상 적절해 보입니다.

(3) 설문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전제로 하는 자유실시 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갑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일부 계셨습니다. 설문에서 갑의 대응방안을 묻고 있으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갑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3. 소결

작성해야 할 조문이 전반적으로 많았습니다. 조문을 완벽히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법전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문을 찾아 쓸 수 있을 정도로 조문의 위치를 대략적으로라도 숙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일반론을 서술할 때에는 줄글로 하나의 문단에 묶어 쓰는 방식보다, 쟁점이 되는 판례나 개념별로 목차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편이 가독성 측면에서 더 좋았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김웅/4월/기초GS/6회/2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논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배점이 10점으로 비교적 크므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의의, 취지 및 성립 요건 등 일반론을 충분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한편, 고리 부분은 물품의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 벌의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 2</p> <p>물품류를 작성하라고 하였음에도 물품명을 작성한 분들이 많았습니다.</p> <p>사안의 경우 심사대상물품과 일부심사대상물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사대상물품인 줄자의 물품류인 제10류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3) 설문 3</p> <p>전반적으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사안의 경우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만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다만, 부분디자인의 도면 도시방법을 누락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벌의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므로, 등록받으려는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3. 소결

6회차 GS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2회차를 채점할 때보다 답안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누락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서를 통해 보완하고, 체크하여 숙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문제 1]

I. 실문(1)

1. 법적근거

(1) 디자인 및 심사 등록 출원 - 법 23조 6호

디자인 등록 출원이 디자인 등록 요건 중 일부말을 갖추고 있는
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2) 일학심사 물품류 - 법 23조 4항

디자인 일학심사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류는 총리령에 따라 1, 2, 3, 5, 9, 11, 19류에
대응하는 물품으로 한다.

(3) 디자인 및 심사 등록 출원 심사 - 법 62조 2항

법 62조 2항에 따라 및 심사 등록 출원 심사
신구성, 창작비용성, 선출권주지, 확대형 선출권주지
를 심사하지 않고 관련디자인도 법 62조 3항에 따라
간소화해 심사한다.

(4) 정호제공이 있는 경우 - 법 62조 4항

법 62조 2항에도 불구하고 정호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하여 심사할 수 있다.

(5) 등록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 - 법 62조 5항

법 62조 2항에도 불구하고 신구성, 선출권주지 기호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할 수 있다.

(6) 신규성 - 법 33조 1항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공개된 것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는 구성이다.

(7) 보정 - 법 48조 3항

디자인 및 심사 등록 출원은 디자인 등록 심사 출원으로 그 역으로도 보정 할 수 있다.

2. 사안

(1) 과실 포함 용기에 출원 심사 중기 및 출원 시점

과실 포함 용기는 9월에 출원하는 바 및 심사 등록 출원 대상이다. 심사대상을 잘못된 출원이다.

(2) 신규성 출원 여부

甲은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甲을 판매한다 신규성 출원이 존재한다.

(3) 및 심사 등록 출원으로 보정 가능 및 효과

법 48조 3항에 따라 출원 X를 및 심사 등록 출원으로 보정 가능이다. 이를 통해 출원 시점을 보정해 출원사실을 극복하고 및 심사 등록 출원 결구 신규성을 판단하기 안됨으로 신규성 출원과 무관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결론



특이 일특성사 등 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성 흠결이 있다 236조를 주장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지로부터 12개월 이내인사 요건은 만족한다.

6. 실문(2)

1. 법적 근거

(1) 신규성 - 233조 1항

공지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할 수 없다.

(2) 신규성 상실 예외 - 236조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디자인공제인이 될 경우)에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 예외의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인정된다. 언제든 주장이 가능하다.

(3) 여러번의 공지 제(제)

공지가 여러번 이어진 경우에 등록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처음 등록된 공지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 이어진 일례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등록성이란 동일하거나 차이가 극히 미세하여 상이할 심의가 없는 정도를 말한다.



2. 사안

(1) 신규성 출결 여부

甲은 출원전에 판매를 통해 공지가 되어 신규성 출결의 취지가 있고 TV 방송을 통해 또한 알 공지가 이루어져 신규성 출결이 없다.

(2)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거부

甲이 출원일은 공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바 이를 주장하여 신규성 출결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TV로 인한 공지도 12개월 이내에 공개하기도 한다.

(3) 종합

甲이 판매로 인한 공지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이와 후발성이 있는 TV방송으로 인한 공지에도 효력이 비하므로 무는 판매로 인한 공지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면 안 된다.

3. 결론

앞서 분석의 같이 일부실수로 출결을 하는 경우에도 심사관이 알게 되어 신규성 출결이 명백해 특 62조 5항은 어쨌든 거절 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한다면 통째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I 실용(3)

1. 창작근거

(1) 권리보기 확인 실용 - > 1223

특허권자는 디자인의 권리보기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판단을 위해 권리보기 확인 실용이 가능하다.

(2) 자치실시(디자인) 행보

공자 디자인을 특허 없이 창작 가능한 디자인은 등록 디자인과 대체해 볼것을 없이 권리보기에 속하게 양해를 주장하는 행보이다.

(3) 신규성 상실예외가 될 디자인의 자치실시 행보(예)

예(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될 디자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개가 하였음을 이유로 자치실시 디자인 행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사안

(1)甲의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가능

①甲의 출원은 거절이 되기 없이 등록되었지만 신규성 불결을 안고 있다. 2024.21의 판례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신규성 상실예외가 주장 가능하다.

②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시기와 관련해 개정법은 3월30일 2항은 삭제됨에 따라 언제든지 주장

이 가능하므로 부는 권리보외 확인 심판에서 주장이 가능하다.

(2) 2차 항변 다양 여부

부이 신규성 상실의 여의를 주장하기 양립하면 항변을 더 할 수 있지만 부이 신규성 상실의 여의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항이 된 (과신)은 통한 자치사 이과신 항변은 불가하므로 2차 주장은 다양하지 못 세 하다.

3. 결론

부은 신규성 상실 이외 주장을 통해 2차 항변을 다양하게 만들어 권리보외 확인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을 수 있다.

[문제2]

I. 실문(1)

1. 법적근거

(1) 한국의 물품디자인 - 제42조

그이상의 물품이 한국의 물품으로 후시에 사용되는 경우
통일성이 있다 보면 한국의 물품으로 등극이 가능하다.

(2) 한국의 물품디자인 요건1) 그이상의 물품으로 것

한국의 물품디자인이 되기 위해서 그이상의 물품으로 것을
 요한다.

2) 동시에 사용되는 것

한국의 물품으로 후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적으로 후시에
 사용된다면 충족한다.

3) 통일성이 있는 것

포괄적 통일성이 있거나 상호 질량적인 형태가
통일적이거나 전체 등의 관련적 통일성이 인정
 되었다면 통일성이 있다고 본다.

4) 시행규칙 별표 5의 특정 및 구성물품의 것

시행규칙 별표 5에 제정하는 한국의 물품이거나
 후시에 사용하는 물건도 이에 포괄되고 적혀
 있는 이외의 물품은 포괄하는 경우에는 상거래상
관련적으로 후시에 사용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5) 한벌의 문폴 (가선)의 후면이다

투입성이 인정되는 후드를 한벌의 후면이다므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사안

(1) 2이상 문폴인지 여부

4개의 문폴을 포함하므로 만족한다.

(2) 후시에 사용되는지 여부

판별적으로 제5호를 함께 사용한다.

(3) 통일적 외관이 있는지 여부

동일한 형상의 꼬리 후드를 포함하므로 인정된다.

(4) 시판권리 후의 문폴에 해당되는지

후시에 사용될 것이 인정되나 이미 해당한다고
본다.

(5) 한벌의 후면이다는 출원 가능

한벌의 문폴 출원은 원조하고 투입성 있는 꼬리 후드를
후면이다므로 출원이 가능하다.

3. 결론

세트중 꼬리 후드의 후면이다는 등록 출원이 가능하다.

II. 3.5 실시(2)

1. 제각각

(1) 문플류 기재

실사의 밖 실사가 결게 있는 경에는 실사형극충전
실사형극충전 개가 있는 경에는 수가 많은 것은
수가 동일하다면 외사에 따라 충전한다.

(2) 이차인 대상이 되는 문플

원본의 문플류 기재하거나 나열하는 경에는 특개
기재할 수 있다.

2. 사안

(1) 문플류

결거는 10쪽 제각각 대상이 아 나열하는 19쪽에 있 실사
형극충전에 개당 개당 10쪽 기재 한다.

(2) 이차인 대상이 되는 문플

제각각 서로 기재 하거나 나열 하여 기재 한다.

3. 결론

10쪽 를 기재 하면 된다.



II. 실용적

1. 변형적

① 한벌의 문풀이가의 도면을 작성할 때 위해서는 각 구성문풀이 1개의 도면을 도제할 수 있다 이는 9개면으로 한벌을 병록하게 파악 가능할 때이다.

② 한벌의 문풀이가의 도면에서 특정적 비결을 가진다면 구성문풀이 각 1개의 도면과 전체로서 1개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③ 한벌의 한벌이 아닌 중간이 여러 실시, 파생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사안

각 구성 문풀이 각각자, 실각자, 각도기, 줄기에 해당 하는 각 1개의 도면과 전체로 특정성 있는 1개의 도면을 제출하면 된다. 이런 문풀이가의 여러 변종과 같은 고안들의 형상을 실시하는 사안은 파생으로 도제해야 한다.